

COVID-19 이후 베트남 조세동향

Oct., 2020
서우회계법인베트남
조성룡 대표회계사

서우회계법인베트남
HP: www.seouvietna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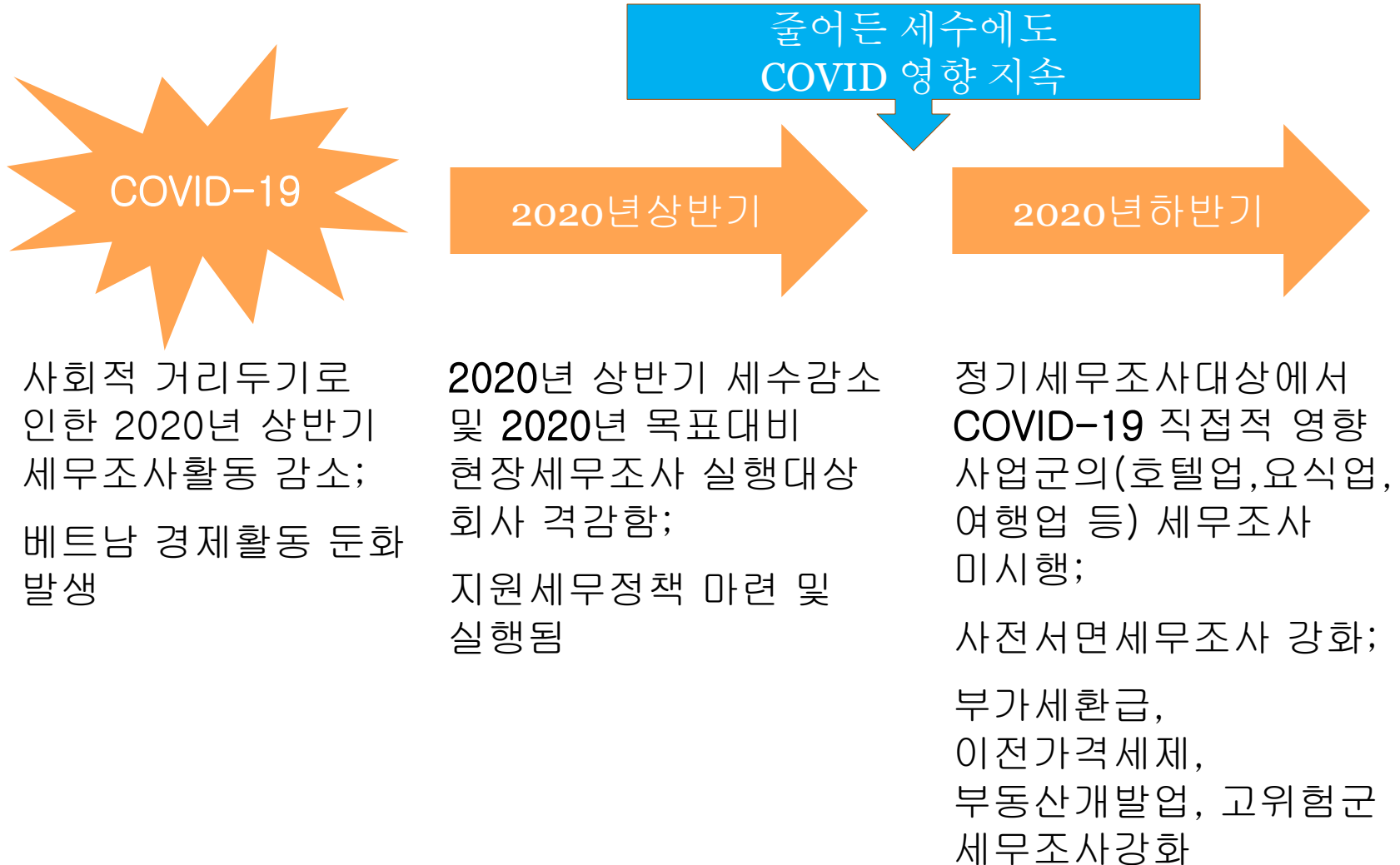


목차

COVID-19 영향 세무조사	3
COVID-19 영향 법인세 감면, 토지사용료 및 세금의 납부연장	4
COVID-19 영향 복리후생비 및 근로소득세영향	6
2020년 조세변경사항	10
2021년 1월 시행되는 노동법의 회계 및 세무영향	18
서우회계법인베트남 소개	19

COVID-19 이후 조세동향

COVID-19 영향 세무조사



COVID-19 이후 조세동향

COVID-19 영향 법인세 감면 및 토지사용료 및 세금의 납부연장, 계속;

- 2020년 법인세 30%감면 결의안

근거법령: 2020년 6월 19일자 베트남국회 결의안

대상회사: 한해 매출액 2,000억동 미만의 회사

감면결의안 내용: 2020회계연도 법인세 30%감면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대상회사: 베트남 법인세법에 근거해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회사 및 영리조직이며, 외국법에 근거해 설립된 회사는 제외.

➤ 외국법에 근거해 설립된 회사의 정의에 대해선 명확한 해석이 부존재하나, 베트남내 법인설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리행위로 과세표준이 발생하는 외국인계약자나 그에 의해 설립된 **Project Management Office**는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닌 걸로 해석됩니다.

➤ 법인세 감면대상기업으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인세감면혜택을 적용하므로 종업원수에 상관없이 매출액 2,000억동 미만 기업은 감면혜택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COVID-19 이후 조세동향

COVID-19 영향 법인세 감면 및 토지사용료 및 세금의 납부연장

- Covid-19 pandemic으로 인한 경영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Decree 41/2020/ND-CP*에 의거 토지사용료 및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적용대상: 회사 및 개인자영업자로서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자로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발생자

납부기한연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세납부(수입부가세는 납부연장 없음): 매월 납부신고자는 3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분기별 납부신고자는 1사분기와 2사분기 해당기간 매출부가세납부액을 5개월연장함(2020년 9월 30 및 2020년 12월 30일).
- 2019년 연간 확정 법인세와 2020년 1사분기와 2사분기 해당기간의 분기에납액의 5개월 연장(2020년 9월 30 및 2020년 12월 30일).
- 국가에 직접 납부하는(민간공단업체 납부하는 사용료는 해당없음) 토지사용료로서 연납금액이나 2020년 상반기 납부기한 토지사용료를 2020년 10월말까지 연장함.
- PMO로서 VAS를 채택하는 Hybrid방식 또는 Deduction 방식의 외국인계약자세도 5개월 연장

COVID-19 이후 조세동향

COVID-19 영향 복리후생비 및 근로소득영향

- COVID-19 관련 발생비용의 법인세 및 근로세 처리방안

- 대전제: 전체 근로자를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른 방역관련 비용은 법인세법상 비용인정되고 근로자의 근로세 대상에서 면제됨.

의무격리기간중에 발생한 근로자의 격리관련비용

- 근거예규: 박닌세무서 2020년 7월 6일자 예규
- 법인세 영향: 격리관련비용은 회사의 손금인정비용이며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단, 적격세금계산서와 계좌송금거래내역을 제시해야 함. 격리관련비용은 회사의 업무관련비용임을 확인함
- 근로세영향: 격리비용은 근로자에 대한 급여성격의 복리후생비 지급이 아님을 확인함. 근로소득세 과세면제됨

COVID-19영향으로 WORK PERMIT없이 지급된 급여의 법인세 비용처리

- 근거예규: 박닌세무서 2020년 6월 25일 예규
- WORK PERMIT발행이 어려운 COVID-19영향을 반영해 Work permit없이 지급한 근로소득을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COVID-19 이후 조세동향

COVID-19 영향 복리후생비 및 근로소득영향

COVID-19영향으로 입국하지 않으나 베트남원천소득이 발생한 베트남회사 소속
내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세 처리방안:

- 한해에 **183일**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거주자로서 누진세율로 근로세 과세;
- 베트남 미입국을 사유로 **183일** 미만을 베트남에 거주하나, 베트남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베트남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면 비거주자로 간주되며, 단일세율 **20%**로 근로세를 납부함.

COVID-19 이후 조세동향

COVID-19 영향 복리후생비 및 근로소득영향

- COVID-19휴무기간중의 급여지급기준으로서 2020년 3월 25일자 *Official letter 1064/LDTBXH-QHLDTL*은 휴무기간중의 급여지급액에 대한 지침을 공표함. COVID-19 로 인한 휴무기간중 하기대상의 직원급여는 고용주와 직원간의 합의를 전제로 최저임금이상으로 지급한다.
 - 베트남으로 귀국할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격리중인 근로자;회사의 격리로 인하여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는 근로자
 - 원재료구입이나 매출격감으로 근로자가 근무할 수 없는 사업장은 우선 전환할 수 있는 타 사업장이나 타업무로 우선 전환한다.
 - 회사가 근무중단으로 부도위기에 있을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는 노동법 제 32조에 근거해서 고용계약을 상호합의 해지할 수 있다.
 - 사업감축으로 인력감축이 야기되면 노동법 38조의 근로계약해지통지를 수행하고 노동법44조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 기본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의 상호합의하에 고용계약해지나 급여의 삭감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COVID-19 이후 조세동향

COVID-19 영향 복리후생비 및 근로소득영향

- 근로제공의 대가형태별 근로소득세 과세

구분	근로소득세 영향	부연설명
급여 및 수당(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급여 성격의 수당)	근무기간에 따라 상이한 근로소득세율 적용되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임.	소액 비과세소득 존재함. 현물보조를 통한 직원복리후생비도 과세소득이 됨.
시간외근무수당 및 특정조건 충족시 수당(성과급, 비간헐적 사유로 인한 수당 등)	근무기간에 따라 상이한 근로소득세율 적용되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임.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시간에 지급되는 시간당 급여를 초과하는 초과할증금에 대해서 비과세
퇴직금	비과세	평균월급여* 50%*근속연수. 단, 고용보험 가입자는 해당사항없음
퇴직위로금(현행 노동법 44조 근거)	비과세	상호합의하에 근속년수당 1개월 급여로 하되, 최소 2개월 이상의 평균월급여 지급.

COVID-19 이후 조세동향

2020년 조세변경사항

- 이자비용손금불산입 조건 변경

- 근거법: 2020년 6월 25일자 총리실이 발행한 *Decree 68/2020/ND-CP* (“*Decree 68*”)

- 현행규정:

이자비용 손금불산입조건을 규정한 *Decree 20/2017/ND-CP* 은 EBITDA (영업이익+감가/감모상각비+이자비용) 의 20%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은 모두 사외유출로 당기소멸하는 손금불산입비용으로 간주했습니다.

- 문제점:

- 현금유출비용의 비용불인정

본사나 투자자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물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도 회사의 이자비용이 비용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함.

- 초기신설회사의 법인세비용 부담증가

이자비용부담이 많은 초기설립회사는 적자기업도 손금부인되고 법인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됨. 적자기업임에도 법인세감면시기의 조기실현상황.

COVID-19 이후 조세동향

2020년 조세변경사항

바뀐 **Decree 68**은 이자비용 손금한도액을 인상하고 손금불산입 비용은 향후 미래년도의 5년내에 이월공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년도에 미사용한 이자비용은 5년내에 향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손금불산입(유보사항)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비교표는 하기와 같습니다.

항목	Decree 20(과거)	Decree 68(신규)
이자비용항목	이자비용 전부	이자수익을 차감한 순이자비용
이자비용제외항목(항상 비용 인정되는 이자비용)	N/A	ODA이자비용, 국가정책에 의한 차입금에서 발생이자
손금산입 허용비율	EBITDA 의 20%	EBITDA의 30%
손금불산입금액의 차년도 이월공제	불허용	향후 5년내 이월해서 손금불산입액이 없는 향후년도에 손금으로 인정
2017년과 2018년 발생한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변경내용 소급적용	불허용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자비용 재계산 수정신고서 제출 조건부로, 이자비용항목과 손금산입허용비율만 소급적용함

2020년 조세변경사항

- 수출매출액의 인식시점의 법인세법상 규정 변경
 - 현행법인세법과 부가세법상 수출매출의 인식시점은 부가세법은 수출통관완료시점이고 법인세법은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으로 규정함.
 - 재경부가 발행한 2020년 5월 7일자 *Official Letter No. 5476/BTC-CST* 은 법인세법상 수출매출의 인식시점을 부가세법과 일치시킴. 이는 INCOTERMS의 소유권이전시점과 무관하게 법인세신고시에 수출통관완료된 매출만을 인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파견계약을 통한 근로비용의 손금인정여부
 - 재경부가 발행한 2020년 5월 7일자 *Official Letter No. 5476/BTC-CST* 에 의하면, 파견계약서(Assignmen letter)는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근로비용의 증빙서류가 아님을 확인함. 따라서, 한국으로부터 파견온 파견임직원은 모두 베트남노동법에 근거한 근로계약을 작성 및 비치해야 합니다.
- 법인세감면혜택을 가진 제조업자가 법인세감면혜택을 가지지 않은 하청업체를 통해 하도공정을 수행한 경우 법인세 감면혜택에 미치는 영향
 - 국세청의 2020년 8월 10일자 *Official Letter No. 3218/TCT-CS*에 의하면 법인세감면 혜택을 가진 제조업자라 하더라도 상기 하도급업체를 사용한 경우 법인세 감면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명기함. 하청기업을 사용하는 외국제조업체에 중대한 불이익 발생함.

COVID-19 이후 조세동향

2020년 조세변경사항

- 소프트웨어제작업에 대한 CIRCULAR NO. 13/2020/TT-BTTTT공표
 - MoIT는 2020년 7월 3일자 발행한 Circular No.13/2020/TT-BTTTT ("Circular 13")에서 소프트웨어제작업의 결정방식에 대한 시행규칙을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제작업은 7단계의 업무과정을 거치게 되며, 법인세감면이 주어지며 이를 위해선 소프트웨어제작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Requirement Identification” and “Analysis and Design”과정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Programming, Coding or Testing을 수행하는 회사라도 상기 두가지 과정중 최소 한 과정을 거쳐야만 소프트웨어제작업으로 인정받음을 의미합니다.
 - 해당 상기 두과정에 대한 진행업무 및 준비서류에 대한 지침서류를 Cir.13은 제공하며, 향후 세무조사시에 해당준비서류를 세무서의 요청시에 소명하여야 소프트웨어제작업의 세제감면이 적용될 것입니다.
 - 소프트웨어제작업으로 인정될 경우 현행 세법은 4년 법인세감면, 9년 50%감면, 설립후 15년간 10%법인세율을 적용함.
 - 시행규칙 시행개시시점:2020년 8월 19일

COVID-19 이후 조세동향

2020년 조세변경사항

- 투자프로젝트 지연에 따른 매입부가세환급 불가

2020년 4월 1일자 국세청은 *Official Letter No. 1393/TCT-KK* 를 공표하고 투자허가서(IRC)에 따른 사업프로젝트의 진행이 지연된 경우엔 매입부가세공제를 부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사업자는 IRC상 진행일정을 변경한 후에 매입부가세를 공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자금의 납입외에도 사업진행일정을 지연한 경우에 납세자의 매입부가세 환급신청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 금융기관이 L/C발행시 매출부가세 부과

2020년 4월 22일자 베트남 국세청은 *Official Letter no. 1606/TCT-DNLF*를 공표하고 L/C발행을 지급대행서비스로 간주하고 매출부가세를 부과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국세청입장을 뒤엎고 L/C발행수수료 수령행위를 부가세면제항목인 금융서비스로 간주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COVID-19 이후 조세동향

2020년 조세변경사항

- 근로소득세 인적공제금액 변경

2020년 6월 2일자로 국회는 *Resolution 954/2020 / UBTVQH14* 를 공표하고 근로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중 인적공제항목을 하기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 본인공제액:11백만동/월;

- 부양가족공제:4.4백만동/월

본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0년 근로소득세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2020년도 근로소득세는 한해 전부에 대해 변경된 인적공제금액을 적용하여 재계산하게 됩니다.

- 비자/거주증비용의 회사대지급시 근로세 납부여부

국세청 2020년 5월 18일자 발행 *Official Letter No. 2014/TCT-DNNCM*에 의거해서 회사가 대지급을 명기한 고용계약서/회사사규를 근거로 지급한 대상비용은 근로세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세상은 회사의 손금인정비용으로 해석됩니다.

2020년 조세변경사항

- 외국인계약자세 적용대상 확대

2020년 3월 31일자 베트남국세청이 공표한 *OFFICIAL LETTER NO. 1388/TCT-DNL*에 의하면 외국인계약자가 베트남내에서 고객사의 매출대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대행하는 서비스(결제대금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계약자는 외국인계약자세 납세의무자이며, 베트남소재 고객사는 외국인계약자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외국인계약자에게 대행서비스수수료를 지급시에 5%를 법인세, 5%를 매출부가세를 외국인계약자세로 원천징수 후 납부해야 합니다. 본 OL에 근거해서 **E-commerce**업계에서 활동하는 해외소재 IT 결제대행기관들은 베트남내에서 대행서비스 수수료 수령시 **FCT**를 부담하고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FCT를 원천징수차감한 후의 결제대행수수료가 해외소재 IT결제대행기관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2020년 조세변경사항

- 직원의 교육훈련기간동안의 근로세 납부방식 및 중복 근로소득자의 근로세 납부신고
2020년 3월 25일자로 하노이세무서가 공표한 Official Letter no. 14151/CT-TTHT에 의하면 직무교육계약시 피교육자에 대한 근로세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훈련기간동안 회사가 피교육자와 3개월이상의 고용기간을 지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회사는 피교육자의 근로세를 누진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 후 납부합니다.
 - 교육훈련기간동안 회사가 피교육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서, 근로자가 받는 월 급여가 2백만동 이상이면, 급여총액에 10% 근로세 단일세율 원천징수합니다. 단, 2백만동 미만은 근로소득세 면제됩니다.
 - 2개 이상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중복소득자이면,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를 각각의 고용주가 월별/분기별 예납한후에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을 개인명의로 자체 신고해야 합니다. 각 고용주는 해당년도의 고용주별 근로세납부영수증을 근로자에게 요청받을 시 매년 발행해야 합니다.

COVID-19 이후 조세동향

2021년 1월 시행되는 노동법의 회계 및 세무영향

- 시간외근무수당 손금불산입 한도액 감소하나 여전히 존재함. 소폭 증가한 1인 근로자당 년 300시간을 한도로 시간외근무를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변동으로 인해 관할 DOLISA에 취업규칙 갱신사유 발생함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은행계좌이체 실행시 계좌송금 관련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함.
- 사용자는 임금지급시에 매번 반드시 근로자에게 임금, 시간외근무수당, 급여공제내역을 명기한 급여명세서를 발행해야 한다.
- 노동법의 대상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도제훈련계약 및 인턴십 계약 및 실질적 근로계약관계자를 대상으로 확대해석 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및 SHUI보험료 납부대상도 확대해석될 가능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현행 근로세는 누진세율로 서비스용역계약보다 과세율이 높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수노동조합의 가능해 지므로, 노조지원금을 지급할 대상도 복수로 확대될 지를 향후 추가입법내용을 통해 살펴야 합니다.

서우회계법인 소개

서우는 베트남 내 조세/회계자문, **재무컨설팅, 회계감사 및 HR서비스**를 전문으로 수행하고자 전문가적 실무경험을 축적한 한국회계사들과 베트남 회계사들이 50여명의 현지 전문가들과 활동하고 있는 Leading 중견회계법인입니다. 베트남 PWC 베트남에서 장기근속한 조성룡 대표회계사 및 Deloitte 베트남에 근속한 이영동회계사, PWC 베트남에 근속한 김형준회계사를 중심으로 베트남투자 및 진출에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노이 본점(참빛빌딩 10층) 및 Saigon지점(CJ 빌딩 3층)에 각각 위치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회계사

(서우회계법인베트남 대표)

Tel: 024-3776-7050

Mobile Phone: +84 98 548 7377

Email: csrgs@seouvietnam.com

주소: 참빛빌딩 10층, 117 Tran Duy Hung, Hanoi City

김형준 회계사

(호치민 지점장, 한국 CPA)

Tel: 028-3636-4671

Mobile Phone: +84 90 247 7335

Email: kimhj@seouvietnam.com

주소: CJ빌딩 3층, 6 Le Thanh Ton, HCM City

이영동 회계사

(하노이지점, 한국 CPA)

Tel: 024-3776-7050

Mobile Phone: +84 97 749 2083

Email: ydleeok@seouvietnam.com

주소: 참빛빌딩 10층, 117 Tran Duy Hung, Hanoi City